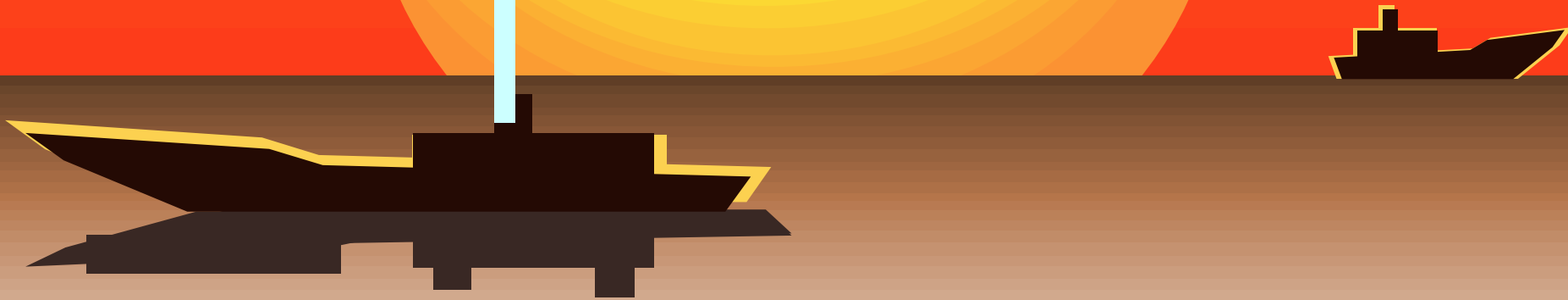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개선방안





화장품 표시·광고 개선방안

2011. 2. 16.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장 설효찬



목 차

1

관련법령

2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안)

3

향후 추진계획

I. 관련법령



✓ 화장품 정의(법 제2조)

- ▶ 인체 청결·미화, 피부·모발 건강 유지·증진 목적의 인체 경미한 작용의 물품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등의 금지(법 제12조)

- ▶ 의학적 효능 효능·효과 등으로 오인 우려 표시·광고
-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표시·광고
- ▶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가능 표시·광고
- ▶ 기타 소비자를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I. 관련법령



✓ 화장품 표시·광고시 금지사항(시행규칙 제15조)

- ▶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 ▶ 기능성화장품 오인 가능 표시·광고
- ▶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사용 등 표시·광고
- ▶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광고
- ▶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광고
- ▶ 화장품 정의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I. 관련법령

✓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시 처분 사항(법 제12조 위반)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9조제1항)

표시·광고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시행규칙 제18조)

| 위 반 내 용 | | 1차 | 2차 | 3차 | 4차 |
|------------------------|------|---------|----|-----|-----|
| 의학적 효능효과, 기능성화장품 관련 | 표시위반 | 판매정지 3월 | 6월 | 12월 | - |
| | 광고위반 | 광고정지 3월 | 6월 | 12월 | - |
| 소비자 기만, 오인 | 표시위반 | 판매정지 2월 | 4월 | 6월 | 12월 |
| | 광고위반 | 광고정지 2월 | 4월 | 6월 | 12월 |

II.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1/17

✓ 추진배경

- ▶ 불법 스테로이드 화장품 언론보도 후 표시·광고 및 효능에 소비자 불만 증폭
- ▶ 국회 등 비기능성 화장품 표시·광고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른 표시·광고제도 정비 필요
- ▶ 아토피, 여드름 등 효능 표시·광고 등 지속적 규제완화 추진
- ▶ 선진국 표시·광고의 허용범위 조화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2/17

✓ 현황 및 문제점

- ▶ 아토피, 여드름 등 효능·효과 입증자료 없이 50가지 'positive list' 운영('09.1.1)
- ▶ 의약품 오인 표현에 대해 'negative list' 부재
 - ※ 미국 등 선진국은 의약적 표현 금지. 표시광고에 대해 업체 무한 입증 책임 부여
- ▶ 기능성화장품, 일반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이원화로 행정 효율성 저하
- ▶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및 국제조화 미흡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3/17

✓ 추진경과

- ▶ 표시·광고 관리방안 마련 위한 업계 의견 조율('10.10.8)
- ▶ 소비자단체·업계 등과 4차례 회의 ('10.10월 ~ '11.1월)
- ▶ 대한화장품협회·업계와 간담회('10.12.23)
- ▶ 청내 이슈토론회 ('10.12.29)
 -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허용 금지 검토 필요성 제기
- ▶ 외국 관련 규정, 표시 사례 수집('11.1.10)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4/17

✓ 개선방안

▶ 금지표현 관리

- 아토피, 여드름, 건선, 소양증 등 질병 치료·경감·예방 오인 표현
- 피부세포재생, DNA 활성화 및 태반, 제대혈 등 줄기세포 배양액 기원 표현

▶ 인체시험자료로 입증한 경우 조건부 허용 표현

- 여드름, 셀룰라이트, 피부노화지연, 피부 혈행 개선 등

▶ 가이드라인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화장품 표시·광고 등급제 도입 추진

II.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5/17

✓ 목적(제1조)

- ▶ 화장품 표시·광고시 금지표현과 허용표현을 제시하여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 적용범위(제2조)

- ▶ 제조·수입 화장품의 표시·광고

✓ 표시·광고 기준(제3조)

- ▶ 유형별 금지 또는 허용 표현 세분화
- ▶ 허용표현의 입증대상·방법, 기준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6/17

✓ 제조업자등의 준수사항(제4조)

- ✦ 수입화장품 외국어 표기 수정, 삭제, 오버레이블링한 경우 유통시 스티커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
- ✦ 조건부 허용 표현 입증 위해 객관적 방법으로 *in vivo, in vitro* 시험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7/17

✓ [주의사항]

1. *in vivo, in vitro* 입증결과는 화장품 정의에 부합한 경우 인정
 2. '허용표현'외 표현은 화장품 정의에 부합한 경우 표현 인정
단, 조건부 허용표현은 명시된 표현만 인정
 3. 그외 표현은 행정처분, 유권해석 사례, 협회의 자율광고
심의 사례 참고
- ※ 표현가능 여부는 식약청 사전 확인 권고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8/17

[별표1] 화장품 표시광고 유형별 금지 및 허용 표현

| 구분 | 금지표현 | 허용표현 |
|---------------------------------------|---|--|
| 1. 질병 진단· 치료·경감· 처치·예방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토피 •여드름 •항균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관절, 림프선 등 신체특정부위사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소독 •항염·진통 •해독, 이노,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효능입증시) •항균 (세정용 중 효능입증시) |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9/17

[별표1] 화장품 표시광고 유형별 금지 및 허용 표현

| 구분 | 금지표현 | 허용표현 |
|-------------------------------|--|--|
| 2.피부관련 2-1. 피부 개선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노화 관련 표현 •셀룰라이트 관련 표현 •붓기, 다크서클 완화 •피부 독소, 피부 속 노폐물 제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노화 지연 (효능 입증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효능 입증시) • 붓기·다크서클 완화(효능 입증시) 붓기·다크서클 가려줌 • 피부,모공노폐물 제거 메이크업지움 |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10/17

[별표1] 화장품 표시광고 유형별 금지 및 허용 표현

| 구분 | 금지표현 | 허용표현 |
|---------------------|--|---|
| 2-1. 피부 개선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손상 회복,복구에 도움 • 상처로 인한 반흔 제거, 완화 • 임신선, 튜살 제거, 완화 • 가려움 완화 <p>(피부건조 기인한 가려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뽀루지 개선 • 기저귀 발진에 효과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건조 기인한 가려움 완화 • 피부자극, 스트레스 완화,진정 • 건성, 지성, 민감성 피부 사용에 적합 • 피부미백 도움 (기능성에 한함) • 피부 주름개선 도움 (기능성에 한함)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 차단 도움 (기능성에 한함) |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11/17

[별표1] 화장품 표시광고 유형별 금지 및 허용 표현

| 구분 | 금지표현 | 허용표현 |
|---------------------|--|------|
| 2-2. 신체 개선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 일부 날씬하게 함• 가슴 확대• 얼굴 크기 작아짐• 다이어트 효과적 <p>예 : 지속적 체중감량, 체형변화, 몸매개선, 피하지방분해, 부분적 군살 관리 명품 보디라인 갖게 된다 등</p> | |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12/17

[별표1] 화장품 표시광고 유형별 금지 및 허용 표현

| 구분 | 금지표현 | 허용표현 |
|---------------------|------|--|
| 2-3. 색조 관련 표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 결점 감추고 색조, 색채 효과로 아름다움 더함• 물, 피지 색조효과 흐트러짐 방지• 광학적인 특성, 색조 효과 이용 입체적 효과 |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13/17

[별표1] 화장품 표시광고 유형별 금지 및 허용 표현

| 구분 | 금지표현 | 허용표현 |
|---------------------|---|--|
| 2-4. 모발 관련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발 손상 회복, 복구도움 • 제모에 사용 • 모발 성장 억제 • 속눈썹, 눈썹이 자람 • 탈모방지 및 양모, 발모 효과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예 : 모발 성장기 연장, 모발 두께 증가 모발을 나게 한다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발 손상 예방, 개선. • 손상모발 보호해 부드럽게 함 • 비듬, 가려움 덜어줌 • 일시적 모발 착색 • 눈썹을 일시적으로 길게 보임 • 눈썹 볼륨감, 세팅 효과 |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14/17

[별표1] 화장품 표시광고 유형별 금지 및 허용 표현

| 구분 | 금지표현 | 허용표현 |
|----------------------|--|---|
| 2-5. 손발톱 관련 표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톱 수분, 영양 공급, 손상 예방 • 손톱 보호, 색조 및 광택효과 |
| 3. 생리 활성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순환 원활 •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 성생활 도움 암시표현 (여성크림, 성 윤희작용) • 땀 발생 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혈행 개선(효능 입증*시) • 좋은 향기로 즐거운 기분 |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15/17

[별표1] 화장품 표시광고 유형별 금지 및 허용 표현

| 구분 | 금지표현 | 허용표현 |
|--------------------|--|---|
| 4. 첨단기술 적용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세포 재생 효과 • 피부구성 물질(효소, 콜라겐등) 증가, 감소, 활성화 • 세포, 유전자(DNA) 활성화 • 배아, 태반, 제대혈 줄기세포 기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장벽 강화 도움 • 효소, 콜라겐 증가, 감소, 활성화 표현 (기능성 효능 입증시) |
| 5. 기능성 화장품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효능, 효과 성분 외 다른 성분의 기능성 표방 | |

II.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16/17

[별표1] 화장품 표시광고 유형별 금지 및 허용 표현

| 구분 | 금지표현 | 허용표현 |
|--------------------|---|------|
| 6. 유기농 화장품관련 | •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 부적합 제품의 '유기농(organic)' 표현 | |
| 7. 안전성관련 | • 부작용 전혀 없다 • 먹을 수 있다 | |

※ 조건부 허용표현의 효능·효과 입증대상·방법 및 기준은 [별첨]에 따름

II. 화장품 표시 ·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안)



17/17

✓ [별첨] 조건부 허용표현에 대한 입증대상 · 방법 및 기준

| 입증대상 표현 | 입증방법 및 기준 |
|-------------------------------------|---|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 ▶ 객관적인 <i>in vivo</i> 시험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
|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 ▶ 객관적인 <i>in vivo</i> 시험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
| 피부노화 지연 | ▶ 객관적인 <i>in vivo</i> 시험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또는 <i>in vitro</i> 시험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 ▶ 객관적인 <i>in vivo</i> 시험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
| 붓기, 다크서클 완화 | ▶ 객관적인 <i>in vivo</i> 시험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
| 피부 혈행 개선 | ▶ 객관적인 <i>in vivo</i> 시험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
| 효소, 콜라겐 증가, 감소, 활성화 (기능성화장품에 한함) | ▶ 기능성화장품 해당 기능 입증된 경우 |

III. 향후 추진계획



- ✓ 가이드라인 공청회 '11. 2. 16
- ✓ 가이드라인 마련 '11. 2. 25
- ✓ 가이드라인 지자체, 지방청 배포 '11. 2월
- ✓ 가이드라인 고시 전환 검토 '11. 12월
- ✓ 장기적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일원화 추진 (법 개정)

※ 「화장품법」 중 기능성화장품 범위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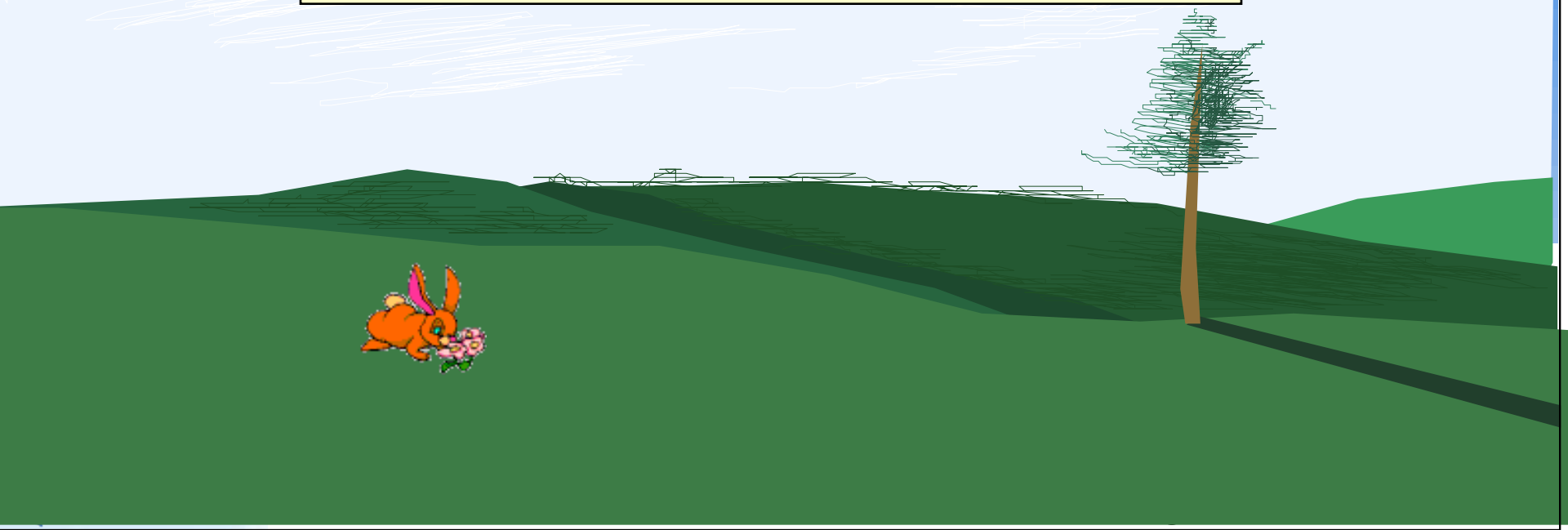


수고하셨습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장 설 효 찬

Tel. 043)719-3401

E-mail snow2145@korea.kr



The background features a stylized landscape with rolling green hills, a single tree on the right, and a small orange rabbit with pink ears in the foreground. The sky is light blue with white clouds.